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
특별법시행령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진상규명 조사,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추모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4.5.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사위원회 직원 정원·조직(안 제2조~제7조)

- 조사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조사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하고, 이 외에 파견공무원 수는 27명으로 정함
- 조사위원회 사무처에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안전사회국을 두고, 조사위원장 밑에 보좌관을 둠

나.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8조)

- 조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수행시 서면으로 하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술청취 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 미리 기관 등에 일시등을 알려야 하며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별지 제1호 서식)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
- 조사대상자, 참고인, 관련 증거·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다.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 조사위원회는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관련 조사위원회가 생산한 자료, 조사자료 등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함

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4조~제17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추모지원단’을 둠

마.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안 제19조~제22조)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 등을 결정
-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바. 생활·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23조, 제24조)

-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기준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하도록 함
-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등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으로 함

사. 치유휴직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 등(안 제27조, 제28조)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지원(안 제33조)

-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조언,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자. 추모위원회 구성 등(안 제35조)

- 추모위원회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장,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 재난관리·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유가족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 추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차.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43조)

-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없 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이하 “조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59명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장, 상임위원과 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정원 외에 법 제2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 정원 27명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전산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은 법무부, 8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주사 또는 행정주사 2명,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9조 제1항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안전사회국을 둔다.

② 조사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③ 법 제19조 제2항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위원장을 보좌한다.

1.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 · 조정
2. 조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및 의견수렴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협조
4. 기타 조사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5조(기획지원과) 기획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 · 조정
2. 조사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 회의의 개최 및 운영
3. 조사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운영 및 관리
4.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5. 조사위원회 관련 법령 및 규칙의 제정 · 개정 및 운영
6. 조직 및 정원 관리
7. 정보공개청구, 비위사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8.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9. 소속 직원의 임용 · 교육훈련 · 연금 · 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
11.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12.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보안, 청사출입 및 사무공간 관리
1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 국유재산 관리,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
16. 세입 · 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처리

17. 감사에 관한 업무

18. 공문 · 우편물의 접수, 발송 및 분류

19. 정보화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 · 보수

20. 방송 · 통신장비의 구축 및 유지 · 보수

21.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진상규명조사국) ① 진상규명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진상규명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 국 소관 사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 조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법 제30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79조에 따른 벌칙 부과와
관련된 업무,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9.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0. 국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11. 조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직권조사 또는 조사신청 사건 가운데 희생자의 사망원인 등의 조사
2. 소관 사건에 관하여 국가 등의 10·29이태원참사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조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자 이외의 피해에 관한 직권조사 및 조사신청 사건의 조사
2. 소관 사건에 관하여 국가 등의 10·29이태원참사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조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안전사회국)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과, 피해자권리보장과, 대외협력과를 둔다. 재난안전과장과 대외협력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사건에 관하여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 조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

2. 피해자 지원방안의 점검,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4.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희생자 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와 소통 협력
2. 조사신청,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3. 국회 등 관계 기관 협력 업무
4. 조사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5. 조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언론 홍보, 홈페이지의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6. 국제 교류 · 협력 및 영문 뉴스레터 · 소식지, 영문 홈페이지 등 국제 홍보
7. 조사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8. 그 밖에 조사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제8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사수행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청취는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 등에 일시 · 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 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 · 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증인 등의 보호)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자문기구의 구성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국가 기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조사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사항)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생산·접수 또는 수집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료의 사본

2. 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자료의 사본

②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시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방법은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자료 사본을 보존상자 등에 넣은 후 그 목록과 함께 추모시설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사본은 전자매체에 수록하고, 그 목록과 함께 추모시설에 송부해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 종료시점까지도 추모기념관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의 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법 제5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재판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른 구제절차에 참여 했던 경우

-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

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조직) ① 법 제51조 제3항 및 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또는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상응하는 서류, 「재외국민 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국외 거주자인 경우) 등 증빙자료

2. 희생자 또는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제3항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의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국외체류,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부양의무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신청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신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5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완할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및 관계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52조 제3항에 따

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 일자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보호자가 대신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재심의) ①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관계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4항 중 “법 제5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결정기간”은 “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재심의 결정기간”으로 본다.

③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 일자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④ 제3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② 이 경우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로서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정한다.
- ④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 ⑤ 국가는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정한다.

제24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10.29이태원참

사 이후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25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 ②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 등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26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① 국가 등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한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 등의 필요한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등은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27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의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3.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제28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填)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 제1호의 비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치유힬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 제2호의 비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이 못 되는 치유힬직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30일을 1개월로 보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치유힬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직 종료 후 치유힬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치유힬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치유힬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주가 치유툽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툽직자에 대한 고용 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정한다.

제29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으로 하고, 그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

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30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 ②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31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국가 및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제출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국가 등은 제2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등에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 ③ 제1항의 법률지원의 범위와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33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 · 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 · 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정한다.

제34조(추모기념관의 시설 · 장비) 법 제67조에 따른 추모기념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모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정한다.

제35조(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장

2.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 ·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해 ·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 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유가족

4. 그 밖에 추모 사업에 대해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제1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모위원장”이라 한다)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추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모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추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추모위원장이 소집한다. 추모위원장은 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

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추모위원장은 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와 추모위원회와 관련하여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모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7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제42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 ④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존사무 처리 기간 중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잔존사무처리 기간 동안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은 기획지원과와 자료기록단 소속 직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존사무 처리 기간 동안 잔존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직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기존의 공무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 제2항 관련)

총 계	89
정무직 계	3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2
별정직 계	59
고위공무원단	3
4급 상당	6
5급 상당	11
6급 상당	26
7급 상당	13
일반직 계	2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7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기록연구사 · 출입국관리주사 · 검찰주사 · 전산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시설주사	9
검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
특정직 계	6
경감	1
경위	2
소방경	1
소방위	2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80조 제1항 제1호	1,000	1,500	2,500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1항 제2호	1,000	1,500	2,500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 제1항 제3호	1,000	1,500	2,500
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 제1호	400	600	900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 제2호	400	600	900
바.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80조 제2항 제3호	400	600	900

[별지 제1호 서식]

위 원 증

(전 면)

(단위 : cm)

위 원 증	
사 진(철인)	
성	명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3
0.3

5.6cm

0.3
1.1
8.3cm
4.5
1.2
0.9
0.3

49mm×75mm

(인쇄용지 : 특급 190g/m)

(후 면)

(단위 : cm)

발행번호.....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위촉기간.....
200 .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0.7
0.7
0.7
1.2
0.7
0.4
1.5
1.8
0.3

8.3cm

조 사 관 증

(전 면)

(단위 : cm)

조 사 관 증	
사 진(철인)	
성	명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0.3
0.3

5.6cm

0.3
1.1
4.5
1.2
0.9
0.3

8.3cm

49mm×75mm

(인쇄용지 : 특급 190g/m)

(후 면)

(단위 : cm)

발행번호.....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위촉기간.....
200 .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0.7
0.7
0.7
1.2
0.7
0.4
1.5
1.8
0.3

8.3cm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m²]

첨부서류	1. 신청인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상응하는 서류, 「재외국민 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국외 거주자인 경우) 등 증빙자료 2. 희생자 또는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제3항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의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근거한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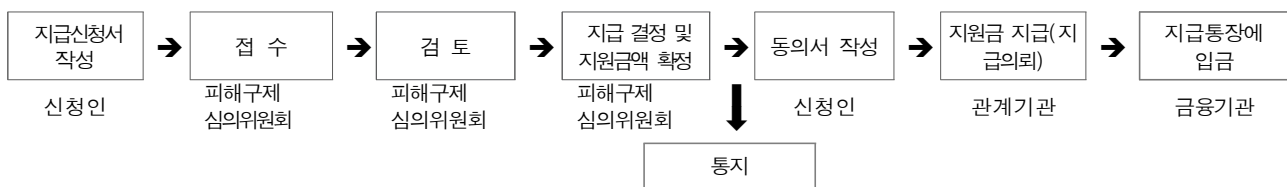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2. 신청인이 2명 이상이고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 선(先)순위자 등을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①란에 적습니다.
3. ②란에는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의 부, ○○○의 모, ○○○의 자 등).
4. ③란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당시 직업이 있던 경우에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
6. ⑤란 신청액은 지원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지원금 지급신청인의 표시				
1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2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3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4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5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작성방법

지원금 지급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신청인"○○○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로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위임자)은 위 사람에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 표시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의 신청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의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청구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의 수령 년 월 일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위임사유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제3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서식으로 지원금의 지급신청 시마다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 피해자 인정 [] 지원금 지급 결정서				
결정번호		제 호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의		
주 문				
지급액	금액 : 원정(₩)			
결정내용은 뒷면에 작성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결 정 내 용	
항 목	금 액
생활지원금	금액 : 원정(₩)
의료지원금	금액 : 원정(₩)
합 계	금액 : 원정(₩)
[산출명세]	

[별지 제5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 피해자 인정

[]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귀하의 ([] 피해자 인정 [] 생활지원금 []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불임 ([] 피해자 인정 [] 생활지원금 [] 의료지원금) 결정서와 같이 ([] 피해자 인정 [] 생활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아래 적힌 방법에 따라 ([] 피해자 인정 [] 생활지원금 [] 의료지원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 결정에 동의할 경우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지원금 등의 청구 및 수령용) 1부

·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다.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지원금 등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2.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금 등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등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10·29이태원참사 심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지원금 등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 서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2개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사관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서명 또는 인)

– 49 –

[별지 제7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 피해자 인정 재심의 []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				
결정번호		제 호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의		
주 문				
지급액	금액 : 원정(₩)			
결정내용은 뒷면에 작성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피해자 인정 재심의 []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귀하의 ([] 피해자 인정 재심의 [] 지원금 지급 재심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붙임 ([] 피해자 인정 재심의 []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와 같이 ([] 피해자 인정 재심의 [] 지원금 지급 재심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적힌 방법에 따라 ([] 피해자 인정 재심의 [] 지원금 지급 재심의)의 지급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등(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 등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지원금 등의 청구 및 수령용) 1부

·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다.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지원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첨부: 지원금등 재심의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치유휴직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 근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휴직기간: 2025. . . ~ 2025. . .	
	④ 피해 구분: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희생자 성명: / 희생자 주민등록번호:) []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첨부서류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치유휴직 신청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④란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 구분을 적습니다.
- 치유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특별휴업휴직을 지원받은 기간 또는 특별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수급기간은 치유휴직 기간에서 뺍니다.
-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이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치유�휴직 통지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치유툐직 신청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치유툐직기간 2015. . . ~ 2015. . .	
	피해 구분: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희생자 성명: / 희생자 주민등록번호:) []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치유툐직 허용여부	[]허용 []불허용	불허용 사유:
--------------	--------------	---------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휴대전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툐직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고용센터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툐직을 허용한 경우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이하 "치유툐직자 고용유지비용"이라 합니다)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 치유툐직자 고용유지비용 신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자 치유툐직 종료 후 치유툐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툐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근로자 치유툐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툐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툐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1호 서식]

치유�휴직 변경([]개시에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 근로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④ 치유�휴직 신청일:	
	⑤ (치유�휴직 신청 시)휴직기간: 2015. . . ~ 2015. . .	
	⑥ (치유�휴직 변경 후)휴직기간: 2015. . . ~ 2015. . .	
⑦ (치유�휴직 철회 사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변경([]개시에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그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3.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2호 서식]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회차)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신청 사업장	① 사업장 관리번호			
	② 명 칭			
	③ 소 재 지			
	④ 전화번호 (담당자: , 휴대전화:)			
신청내용	⑤ 치유휴직자 수	명	⑤-1 지원금 신청금액	원
	⑥ 대체인력 채용자 수	명	⑥-1 지원금 신청금액	원
	계		원	
	※ 대상 근로자별 신청 현황은 뒤쪽에 적습니다.			

⑦ 치유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1부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주가 치유휴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6116